

문서번호	저출산대책담당관-104769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저출산대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보존기간	년	김승환	이영필	윤기환	06/02 허미연
결재일자	2011.6.2.	협 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Women Friendly Seoul

여성이 행복한 서울

2011. 6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초기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종합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해비치 재단 및 (사)한국다문화센터와 협약을 체결코자 함

## I 추진배경

-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과 (사)한국다문화센터에서 공동으로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구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각 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방침 결정(저출산대책담당관-103882호, '11.5.16)
  - 서울의료원 건물(3층)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활용기로 결정

## II MOU 체결식 개최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1. 6. 8(수) 10:30 ~10:50
-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7층) 간부회의실
- 참 석 자 : 총 8명
  - 서울특별시장
  -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이사장 이희범
  -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최흥규)

※배 석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해비치재단 장재호 사무총장,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희 사무총장, 이현정 연구소장

○ **진행순서**

※ 사회자 : 저출산대책담당관

시 간	진 행	내 용
10:30	간부회의실 입장	▪ 시장 간부회의실 입장 ▪ 참석자 소개(정책관) 및 인사
10:32	환	▪ MOU체결 단체장 등과 환담
10:40	개	▪ 개식선언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0:43	경 과 보 고	▪ 사업취지 설명(정책관)
10:45	MOU체결 서명	▪ 시장님과 MOU체결 단체장들 공동 서명
10:50	기 념 촬 영	▪ 시장님과 MOU체결 단체장들 기념촬영

**III MOU 주요내용**

- 서울시 :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 장소(건물) 제공
-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비 전액 부담
- (사) 한국다문화센터 : 다문화가족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 협의 결정

**IV 향 후 과 제**

- 서울의료원 건물에 대한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 및 용도변경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 첨 부 1. 협약서(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재)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사)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각 기관의 협력범위)

본 협의에 의하여 3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는 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재)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은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3. "(사)한국다문화센터"는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4. "서울특별시"와 "(재)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사)한국다문화센터"는 공동으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 제3조(효력의 발생 및 상실 등)

1. 본 협약서는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센터 지정이 취소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3. 본 협약서의 내용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제4조(기타사항)

1.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3기관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2.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1. 6. 8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이사장 이 희 범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 선(최홍규)

---

